##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(조응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9285

발의연월일: 2021. 4. 2.

발 의 자:조응천·오영환·이규민

유기홍 • 최인호 • 박성민

서삼석 · 최기상 · 이상헌

김철민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인터넷 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·반대 등의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 실명을 확인받는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하고, 행정안전부장관 및 신용정보업자는 실명인증자료를 관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. 또한 실명확인을 위한기술적 조치를 하지 않거나,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는 정보를 삭제하지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

하지만 인터넷 실명제는 위법한 표현행위가 감소할 것이라는 추상적 가능성에만 의존할 뿐 실제효과가 있는지 불분명합니다. 오히려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,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.

한편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의사표현이 가장 긴요한 선거운동기간

중에 인터넷 언론사 홈페이지 등 이용자로 하여금 실명확인을 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익명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고 부정적 효과를 방 지하기 위해 모든 익명표현을 규제함으로써 대다수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도 광범위하게 제한한다고 하여 위헌 결정을 하였습니다 (2021. 1.28. 선고, 2018헌가16).

이러한 위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현행법 상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실명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(안 제82조의6 및 제261조제3 항제4호). 법률 제 호

##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2조의6을 삭제한다.

제261조제3항제4호 및 같은 조 제6항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혅 했 개 정 아 <삭 제> 제82조의6(인터넷언론사 게시판· 대화방 등의 실명확인) ① 인 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 판·대화방 등에 정당·후보자에 대한 지지·반대의 문자·음성·화 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(이 하 이 조에서 "정보등"이라 한 다)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|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(이하 이 조에서 "개인신용평가회사" 라 한다)가 제공하는 실명인증 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 다. 다만, 인터넷언론사가 「정 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 호 등에 관한 법률 | 제44조의 5에 따른 본인확인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실명을 확인받도 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한 것

으로 본다.

- ② 정당이나 후보자는 자신의 명의로 개설·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·대화방 등에 정당·후보자에 대한 지지·반대의 정보등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할수 있다.
- ③ 행정안전부장관 및 개인신용평가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한 실명인증자료를 실명인증을 받은 자및 인터넷홈페이지별로 관리하여야하며,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실명인증자료의 제출을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이에 따라야한다.
- ④ 인터넷언론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명인증을 받은 자가 정보등을 게시한 경우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·대화방 등에 "실명인증"표시가 나타나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하여야 한다.
- ⑤ 인터넷언론사는 당해 인터

넷홈페이지의 게시판·대화방등에서 정보등을 게시하고자하는 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기재할 것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.

- ⑥ 인터넷언론사는 당해 인터 넷홈페이지의 게시판·대화방 등에 "실명인증"의 표시가 없 는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 지·반대의 정보등이 게시된 경 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삭제하 여야 한다.
- ① 인터넷언론사는 정당·후보 자 및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등을 삭제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.

제261조(과태료의 부과·징수 등) ①·② (생 략)

-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
- 1. ~ 3의2. (생략)

하다.

4. 제82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

제261조(과태료의 부과·징수 ①·② (현행과 같음)	등
3	
 1. ~ 3의2. (현행과 같음)	
<u>&lt;</u> 삭 제>	

<u>자</u>

- 5. (생략)
- ④·⑤ (생 략)
-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 다.
- 1. 2. (생략)
- 3. 제82조의6제6항을 위반하여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는 문 자·음성·화상 또는 동영상 등 의 정보를 삭제하지 아니한 자
- 4. (생략)
- ⑦ ~ ⑫ (생 략)

5.	(현행과	같음)
υ.	(100)	- $  -$

<b>(4)</b> •	$\overline{(5)}$	(현행과	같음)
\ <b>1</b> /	(0)	\ 1' O - I	-

6	 	 	 	 	 _
	 	 	 	 	 _

1.·2. (현행과 같음) <<u>삭</u> 제>

4. (현행과 같음)

⑦ ~ ⑫ (현행과 같음)